

브랜드전략위원회 규정

제정 2023.04.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의 전략적인 브랜드관리 및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설치하는 브랜드전략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본교의 브랜드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본교 브랜드와 관련된 신규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
- 3 기타 대학홍보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부총장, 기획처장, 대외협력처장,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시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는 홍보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경비지급)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[기획예산팀-862, 2023.4.13.]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